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「건축조례」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보완, 정비하고 규제개혁에 따른 관련조항을 일부 완화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기준 정비 (안 제4조)
○ 건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수 상한선 및 임기 정비 (안 제6조)
○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기준 정비 (안 제17조)
○ 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 (안 별표2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예고기간 : 2018.2.22. ~ 2018.3.14.)
○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 협의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 [주민복지과-16061(2018.3.14.)]

5. 검토의견.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 하여, 지역 주민의 편익 증대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

○ 주요내용은,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리와,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의 상한선 및 임기를 반영했으며, 건축복합 민원 인·허가 시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 실무심의회를 민원일괄협의회로 일원화 하였고, 건축선 및 인접대지와 띄워야 하는 거리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.

○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「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」에 대한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특히 건축부지 활용도 증가로 인한 경기활성화 촉진 및 건축 민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,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